

대한지적공사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13. 8. 5. ~ 8. 26. (15일간)

□ 감사인원 : 3명

□ 지적사항 : 별첨 참조

I.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 변화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위 “2013년 사업계획 및 전략 아젠다”로 선정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분석·평가하고, 각 사업의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 타당성과 미추진 사업의 원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독려함으로서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 감 사 기 간
 - 본 감 사 : 2013. 8. 5. ~ 8. 26.(15일간)
- ☐ 대 상 기 관 : 대한지적공사 본사
- ☐ 감 사 자 : 감사반장 외 2인
- ☐ 감 사 범 위 : 본사 “2013년 사업계획 및 전략 아젠다”에 대하여 감사 실시

3. 감사중점사항

- ☐ 부서별 사업계획 및 전략 아젠다 추진실태 파악
- ☐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 점검
- ☐ 2013년 사업계획 및 전략 아젠다 미추진 사유 규명

II. 감사처분현황

감 사 실

통 보

제 목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평가 기반 조성” 및 “스마트워크 기반 확대 및 정착”
미 추진

관 계 기 관 본사 ○○○○실

내 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운영계획)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수립한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3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통지(○○○○실-46, '13.1.3)」에 따라 철저한 실행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별 산하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간 사업 중에서 2013년도에 기관장, 이사 및 부서장들이 추진하여야 할 핵심 사업들을 선정하여 공사 발전의 전략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기획조정실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기능별 추진실적의 피드백과 경영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업 분석을 반영한 세부실천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 및 전략 아젠다 미추진 현황】

구 분	세부실천과제	추진내용	추진계획	추진여부	담당부서
사업 계획	2.2.1.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평가 기반 조성	· 실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 획: 1월 용역: 2월	미추진	○ ○
		· 공간정보 관련 서비스 품질평가 컨설팅 체계 구축			○ ○ ○
		·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평가 모델 개발 및 품질 평가단 구성			
전 략 아젠다	스마트워크 기반 확대 및 정착	· 스마트워크 지원용 협업솔루션 (사내 메신저 도입)	완료: 6월		○ ○
		· 연수원 전산교육장·생활관 및 업무용 PC 가상화 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마련 - 본사·본부·사무업무 및 지적 재조사 스마트워크 업무개발	완료: 7월		○ ○ ○

그런데도 위 【현황】 같이 「 2013 사업계획 및 전략 아젠다 사업」 중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평가 기반 조성” 및 “스마트워크 기반 확대 및 정착” 과제에 따른 세부실천과제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 및 전략 아젠다에 대한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추진사업에 대한 콘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가 원만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담당부서에서 미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을 독려하는 등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전략 아젠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개 선

제 목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자 선정 기준안 개선

관 계 기 관 본사 ○○○○실

내 용

공사에서는 일괄계약 등 지적측량업체의 불만요인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에 맞도록 공동수주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상생협력 확대에 따스한 LX 이미지 구현」을 2013년 전략 아젠다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 1> 【연도별 지적확정측량(수치지역 포함) 시장 규모】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금 액 (억원)	686	878	1,031	1,294	1,405	

<표 2> 【2012년 지적확정측량 업체별 수주현황】

수주규모	지적측량 업체수(비율)	수주 금액(억원)	비 고
계	156 (100.0%)	341(100.0%)	수치포함(8억)
10억 이상	4 (2.6%)	51(14.8%)	
5억 이상~10억 미만	21 (13.5%)	149(43.8%)	
2억 이상~5억 미만	30 (19.2%)	104(30.5%)	
2억 미만	47 (30.1%)	37(10.9%)	
0원	54 (34.6%)	-	

<표 3> 【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자 선정 심사기준 】

제8조 (심사기준 평가) ①공동수행자 심사기준 평가는 해당 본부의 사업부서에서 실시한다.

②기술능력, 측량장비보유, 측량수행실적, 업무수행능력, 신인도 및 업무중첩도 등을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발주처 요구 및 사업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동수행자 선정 공고기간중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별표 1) 공동수행자 선정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기준점수		배점	비 고
측량수행실적 (20) · 수행면적 (10) · 수행건수 (10)	수행 면적(10점)	수행 건수(10점)	20	· 최근 3년내 지적확정 측량 수행 실적(진행업무 제외) · 사업면적이 20만㎡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최근 3년간 측량수행실적을 적용하지 아니함(20점 부여)
	300만㎡이상 : 10점	10건 이상 : 10점		
	200만㎡이상 : 9점	8건 이상 : 9점		
	100만㎡이상 : 8점	6건 이상 : 8점		
	50만㎡이상 : 7점	3건 이상 : 7점		
신인도평가 (15)	50만㎡미만 : 6점	3건 미만 : 6점		
	휴 업	1월당 0.5점 감점	5	· 평가항목별 각각 5점 만점에 해당건당 감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항목별 최고 점수부여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과태료 (중복감점 처리)	1월(회)당 1점 감점	5	
업무중첩도 (10)	대표자폐업, 변경여부	1회당 1점 감점	5	
	0건 : 10점	3건 : 3점	10	· 측량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지적확정측량 수행중인 업무
	1건 : 7점	4건 : 1점		
	2건 : 5점	5건이상 : 0점		

그러나 위 <표 1>과 같이 연도별 지적확정측량(수치지역 포함) 시장 규모 및 지적확정측량 업체별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말 기준 지적측량 시장은 수치지역 1,405억 원(27.7%), 도해지역 3,663억 원(72.3%)으로 시장 전체규모는 총5,068억 원이며, 이 중 수치지역 시장은 연평균 19.9%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지적확정측량 전체 금액 1,131억 원 중 공사가 798억 원(70.6%)을 수주하였고, 나머지 333억 원(29.4%)을 <표 2>와 같이 102개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수주액의 14.8%인 51억 원(업체당 평균 12.8억원)을 수주하였고, 다음 상위 21개 업체가 43.8%인 149억 원(업체당 평균 7.1억원)을 수주하였고, 그 다음 30개 업체가 104억 원(업체당 평균 3.5억원)을 수주하였으며, 그 다음 47개 업체가 37억 원(업체당 평균 0.8억원)을 수주하였으나,

나머지 54개 업체(전체업체 대비 34.6%에 해당)는 수주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생협력 추진에 따른 개선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자 선정 심사기준」 제8조 제2항의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최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8조 제3항 본부의 재량권 부여에 대한 조정범위를 개선(별표1 참조)하는 등 신규 및 영세업체가 지적확정측량을 공동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공정경쟁 및 청렴한 업무 수행과 상생협력 강화를 제고함은 물론, 중소기업 및 신규·영세업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하여 「지적확정측량공동수행자 선정 심사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정보시스템 이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실적 부진
관 계 기 관 본사 ○○○○부
내 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에서도 공사이전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보 보안 마스터플랜, 재해복구센터 (DR)구축,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이전계획의 일환으로 「정보보안 및 정보자원 운영컨설팅」(○○○○부 - 2610, 2013.7.15) 결과를 반영하여 ‘신사옥 전산시스템 이전계획’과 ‘통신랜(인터넷) 구축 및 운영’ 및 ‘화상 회의실 이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이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현황】

□ 신사옥 전산시스템 이전계획 (세부 실행 계획 및 프레임워크)

구분	추진업무	세부실행계획	실행기한	추진여부*
7월	① 정보보안 및 정보자원 운영컨설팅	• 본사 주전산실 지방이전을 위한 정보자원 운영 컨설팅 완료보고	7월2주	완료
8월	②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정보센터 이전계획 수립	• 그린IT 정보센터 이전 방안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 보안성검토요청서 작성	8월4주	진행중

9월	③ 일상감사/입찰공고	• 경영정책위원회 개최 • 일상감사/입찰공고 실시	9월4주	기한 미도래
----	-------------	--	------	-----------

□ 통신랜(인터넷) 구축 및 운영 (세부 실행 계획 및 프레임워크)

구분	추진업무	세부실행계획	실행기한	추진여부*
8월	① 신청사 사무실 LAN 현황조사	• 지방이전추진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추진 현황 파악	8월4주	완료
9월	② 기본계획수립	• 사무실 네트워크 공사 계획 수립	9월4주	기한 미도래

□ 화상 회의실 이전계획 (세부 실행 계획 및 프레임워크)

구분	추진업무	세부실행계획	실행기한	추진여부*
8월	① 신청사 화상회의 관련 방송시설 현황조사	• 지방이전추진단 AV설비(회의용) 구축 사업추진 현황 파악	8월4주	진행중

그런데도 위 【현황】 과 같이 추진업무 실행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정보시스템 이전에 따른 세부실행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등 정보시스템 이전을 위한 세부실행 추진이 감사일 현재까지 당초 계획한 세부실행계획보다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부장은 신사옥 이전확정(2013. 11. 23)에 따른 정보센터 이전 과제별 추진업무와 부진한 사업 계획을 점검하여 실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개 선

제 목 새업무(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 운영지침 개선

관 계 기 관 본사 ○○○○단

내 용

공사는 「국토공간정보의 가치를 창출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사 역량의 글로벌화와 국가를 대표하는 공간정보산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행동양식의 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적 기반의 서비스 확대와 공적역할 수행 및 사회적 책임 등의 강조를 통한 고객 및 이해관계자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 기반의 새업무 창출을 위해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발보상금 지급현황】

(금액단위: 천 원)

지급년도	건수	구 분	금 액	지급 방법	비 고
2011년	3	새업무 개발 보상금	9,079	새업무 운영지침 제6조에 따라 기관 및 개인 지급	기관 명의로 심의요청 (개발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않음)
2012년	5	“	4,956		
2013년	10	“	10,690		
합 계	18	“	24,725		

【새 업무(지적공간정보업무)운영지침】

제6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간) ①개발보상금은 지적공간정보업무를 개발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개발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기간은 위원회에서 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 및 인정으로 의결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이란 지적공간정보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위 현황과 같이 2011년도부터 개발업무에 기여한 기관(직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개발보상금 신청 시 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 또는 사업아이템 발굴·시스템개발 등을 지원한 기관 또는 개인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관 명의로 심의 요청할 때 개발계획서상에 개발에 기여한 직원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개발에 따른 공로와 보상의 연계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새업무 개발을 위한 개인적 동기부여 및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지적공간정보업무 또는 사업아이템 발굴·시스템개발 등을 개발한 기관 또는 개인(공동)을 명확히 기재하여 지적공간정보업무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발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나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할 사항

○○○○단장은 기술 컨버전스를 통한 수익모델 다변화에 따른 안정적 수익창출 및 지적정보 기반의 사업 영역을 확보함은 물론 공간정보 사업 아이템 및 시스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보상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새업무(지적공간정보업무) 운영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